

2013 사회적 이슈와 인권

제10주제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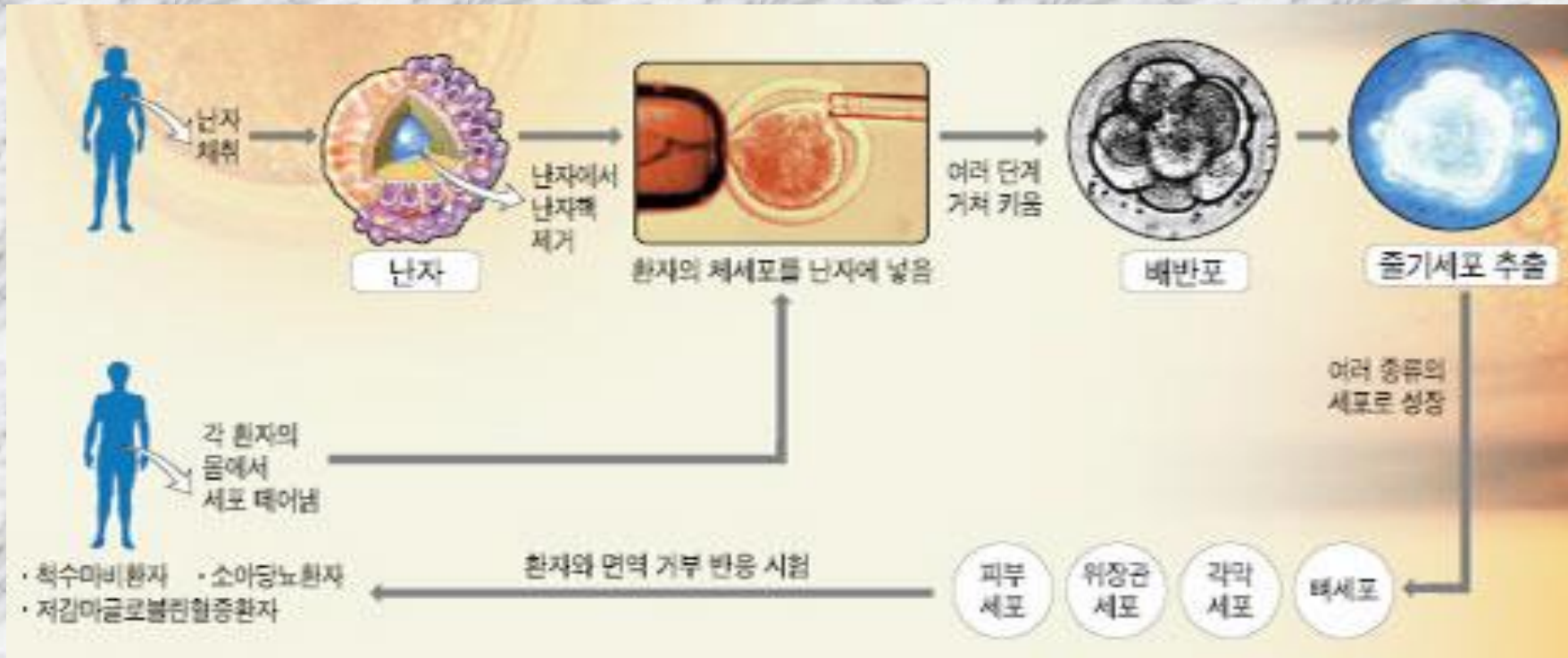
생명복제의 개념

생명복제란

체세포핵이식(치환)기술 또는 단성생식기술을 이용하여 배아를 생성시키는 것

- * 체세포핵이식기술 :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치환)하는 기술
- * 단성생식기술 : 인간의 난자가 수정 과정 없이 세포분열하여 발생하게 하는 기술
- * 배아 : 수정 후 모든 신체기관과 장기가 형성되는 8주차가 되는 기간 동안의 세포군 (계속)

생명복제의 개념



- ① 생식의 목적 (= 개체복제 또는 인간복제)
- ② 치료 및 연구의 목적 (= 좁은 의미의 배아복제)

생명복제와 관련된 인권

(1) 복제된 인간의 존엄성

- ① 동일한 유전정보(DNA)로 유일무이성 파괴
- ② 건강문제와 수명단축의 가능성
- ③ 본인의사에 반하는 생식방식

(2) 배아의 생명권 - 배아가 생명인지 여부 문제

(3) 난자제공자(여성)의 인권

(4) 복제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생명복제 논의의 전제조건

1. 인권으로서 연구의 자유

- 인격권, 생명권에 관한 논의에 초점
- 연구의 자유도 중요

2. 생명에 관한 논의에서 형이상학의 배제

- 논증이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신념(생명의 절대성)이나 자명한 종교적 가치(생명의 천부성)의 배제
- 공리주의적 가치나 이익을 제거

합리적 대안

1. 개체복제의 경우 (= 생식을 위한 복제)

- 인간의 존엄성 문제 (인격권의 문제)

(1) 존엄성의 기초로서 유일무이성의 문제

(2) 복제된 인간의 수명과 건강의 문제

(3) 불임(난임)부부의 자녀출산권과 생식방법선택권

합리적 대안

2. 배아복제의 경우 (= 치료 및 연구를 위한 복제)

(1) 배아의 생명권 문제

-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배아를 파괴

- 배아의 생명체 긍정설

: 생명의 시기는 수정시, 유전적 정체성의 결정, 발생학적 과정의 연속성, 인간이 될 잠재성, 인격체로서의 존엄

- 배아의 생명체 부정설

: 생명의 시기는 원시선 발생시, 배아는 세포덩어리

합리적 대안

2. 배아복제의 경우 (= 치료 및 연구를 위한 복제)

(2) 난치병환자들의 권리 등 공리주의적 논거와 성찰

3. 난자제공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 배란유도나 난자적출의 한계 문제
- 난자의 매매와 강요된 난자제공 문제

헌행법의 태도와 문제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시행]

제20조 (인간복제의 금지)

⇒ 생식을 목적으로 한 개체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의 착상 및 유지, 출산을 금지)

제29조 (잔여배아의 연구)

⇒ 일정한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의 이용을 난임치료나
희귀·난치병치료를 위한 연구 등 목적에 한정하여 예외적 허용

제31조 (체세포이식행위등의 연구)

⇒ 희귀·난치병치료를 위한 연구 등의 목적에 한정 하여
체세포핵이식 또는 단성생식에 의한 배아복제를 허용

토론

1. 생명의 시작은 언제인가(배아는 생명인가)?
2. 생명의 발생학적 시기에 따라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3. 복제된 인간은 동일한 존엄성을 갖는가?